

## 자주 묻는 질문들 F&A

### 공공기관과의 납품대금 조정협의로 가능한가요?

- ▶ 계약당사자가 공공기관이 되어 수·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가능합니다.(조달청 위탁계약 제외)
- \* 예 :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

### 조정협의 신청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
- ▶ 「납품대금 연동·조정협의 지원 시스템」(kbiz.webcost.co.kr)을 통해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원자재 시황과 물가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재료비 등을 입력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을 자가 산출할 수 있습니다.
- \*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료(원가내역서 등)를 기준으로 입력
- ▶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조정협의 신청을 받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법률 자문을 지원합니다.
- \* 지원내용 : 원가분석 지원, 법률 자문(수위탁거래 해당여부 등)

### 위탁기업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?

- ▶ 위탁기업이 1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(수·위탁거래) 또는 공정거래위원회(하도급거래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▶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탁기업에 시정을 권고(벌점 1.5점)하거나 명령(벌점 2점)할 수 있으며,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

#### 상담문의

☎ 02-2124-3206,7  
💻 fairtrade@kbiz.or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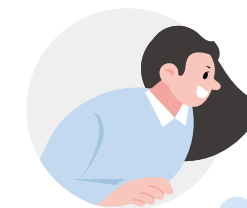
#### 오시는 길

📍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 
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(3F)

#### 홈페이지

💻 www.kbiz.or.kr

##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



납품대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 
중소기업을 대신하여



중소기업중앙회가  
위탁기업과의  
납품대금조정협의를  
도와드립니다!



#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!

2024년 1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 신청요건이 완전 삭제되어 공급원가 (재료비, 노무비, 경비) 변동률의 크기에 상관없이 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.

(근거 : 상생협력법 제22조의2, 하도급법 제16조의2)

## 기 존 (신청요건)

- ▶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% 이상을 차지하고, 그 원재료 가격이 10% 이상 상승
- ▶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% 이상을 차지하고,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이상 상승
- ▶ 재료비, 노무비,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% 이상 상승

## 변 경 (신청요건)

**삭 제**  
(별도 신청요건 없음)

##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란 ?

수탁기업(수급사업자)이 위탁기업(원사업자)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,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(근거 : 상생협력법 제22조의2, 하도급법 제16조의2)

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를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## 적용대상 및 거래는?

**적용대상**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,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협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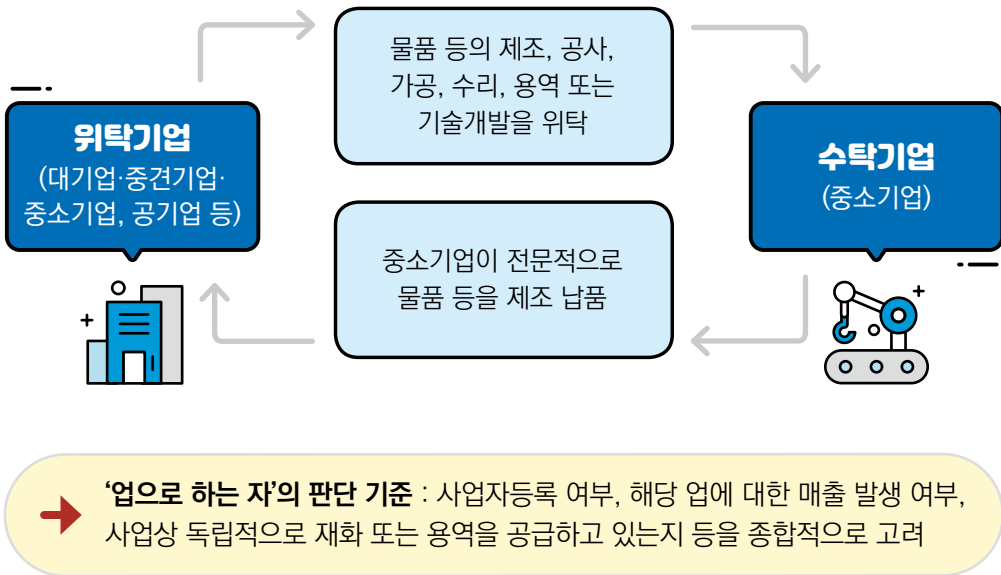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기업(수탁기업) | •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탁기업       | • 민간 : 대기업, 중견기업, 중기업<br>• 공공 : 공기업·공공기관 *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|

**적용거래** 수·위탁거래(계약기간 중일 것)

- ▶ 수·위탁거래란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(위탁기업)가 품질, 규격, 성능 등을 지정하여 중소기업(수탁기업)에게 물품 등의 제조·공사·가공·수리·용역·기술개발을 위탁하는 거래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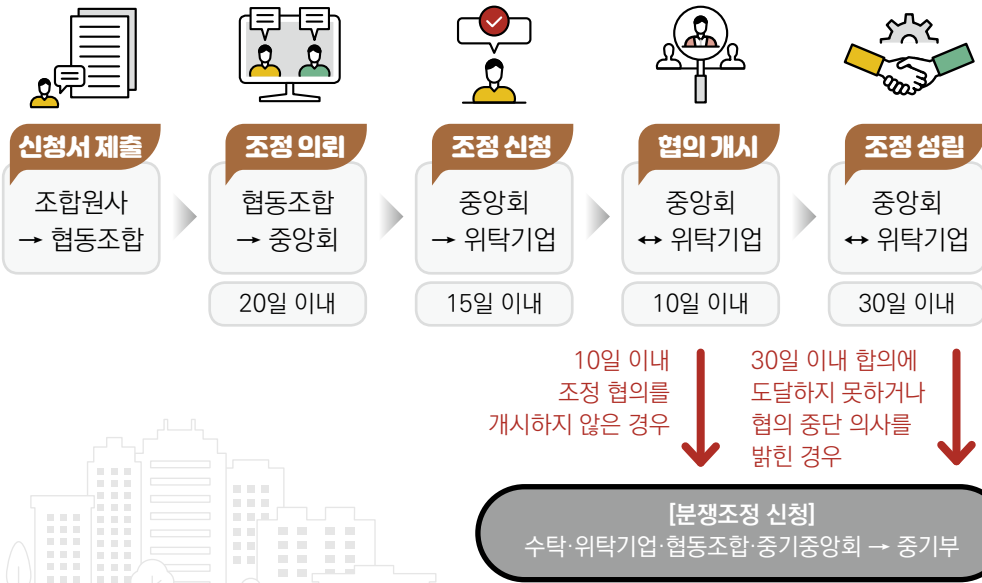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
“수탁·위탁거래”란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을 업(業)으로 하는 자가 물품, 부품, 반제품(半製品) 및 원료 등(이하 “물품 등”이라 한다)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개발(이하 “제조”라 한다)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,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



##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신청서 제출 이후 납품대금 조정협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.



## 조정협의신청 이렇게 하세요!

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 첨부하여 제출

- ▶ 온라인 :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(www.kbiz.or.kr)에서 신청  
☞ 홈페이지 > 상담센터 > 납품대금조정협의 > 조정신청 > [온라인]신청 클릭
- ▶ 오프라인 :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방문 또는 우편(이메일) 발송

〈제출 서류〉

-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
- 공급원가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\*  
\*원가내역서, 견적서, 급여지급내역서, 세금계산서, 카드전표, 현금영수증 등
- 수·위탁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
- (경쟁입찰인 경우) 입찰공고, 낙찰자 확인서 등

※ 신청서식과 매뉴얼은 중소기업중앙회(www.kbiz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☞ 홈페이지 > 상담센터 > 납품대금조정협의 > 제도안내 > 신청방법 확인